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177호

2014년 6월 13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고 제2014- 105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 2
영 조례 일부 개정(안)
- 공고 제2014- 105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 12
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 공고 제2014- 105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 규정 25
폐지(안)
- 공고 제2014- 1065호 2014년 제4차 수용재결 신청 공시송달 공고[소 29
래셋길 소2-14호선 도로개설공사]
- 공고 제2014- 1066호 지방세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립 30

고 시

- 고시 제2014- 84호 간석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 31
지정 및 고시
- 고시 제2014- 85호 간석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변경) 46
고시

회 람								
----------------	--	--	--	--	--	--	--	--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홍보미디어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1055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6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 노인복지법의 개정(2013.12.5.공포)으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가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노인복지 및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에 따른 내용 개정 및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 삭제 등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 노인일자리 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 조항 신설(안 제2조의2)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신설(2013.12.5.공포)내용 반영
- 위탁운영시 절차 및 방법, 위탁취소 요건 개정(안 제4조 내지 제7조)
 -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내용 반영
- 시설의 화재·안전사고 손해배상보험 가입 내용 개정(안 제13조)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대인·대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반영
- 정신 장애인 차별금지 및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일자리 참여자 제한 조항 및 등록취소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노인장애인과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애인과(전화 : 032-453-5853, FAX 453-5859, E-mail : hannom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4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노인복지법의 개정(2013.12.5.공포)으로 남동구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노인복지 및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에 따른 내용 개정 및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 삭제 등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노인일자리 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 조항 신설(안 제2조의2)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시설(2013.12.5.공포)내용 반영
- 위탁운영시 절차 및 방법, 위탁취소 요건 개정(안 제4조 내지 제7조)
 -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 내용 반영
- 시설의 화재·안전사고 손해배상보험 가입 내용 개정(안 제13조)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대인·대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 정신 장애인 차별금지 및 현실여건을 반영하여 일자리 참여자 제한 조항 및 등록취소 조항 삭제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제23조의2”를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31조”로 한다.

제2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시설 및 인력기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시설 및 인력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과 같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삭제한다.

①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의해 구청장이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운영위탁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2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은 삭제한다.

① 제4조제2항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구성·운영한다.

제6조제5호 중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노인복지법 제42조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사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제4조에 의한 위탁의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2조제1항 중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며”를 “소관업무, 회계장부, 복무사항 등 위탁사업 및 운영사항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보험가입)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의3에 의해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매년 대인·대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제23조의2 규정에 의하여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발굴 및 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u><신 설></u>	제1조(목적)-----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및 제31조 ----- ----- ----- ----- ----- ----- -----. 제2조의2(설치 및 인력기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의 시설 및 인력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과 같다.
제4조(위탁운영 등) ① 노인인력개발센터는 구청장이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인력개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위탁조건·수탁 기관 선정방법·위탁신청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위탁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제4조(위탁운영 등) ①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 의해 구청장이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의한 운영위탁은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의 2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다.

에 2주 이상 공고하여 야 한다.

- ④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위탁선정위원회) 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남동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로 선정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운영에 관한 회계처리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 ② (생략)

제8조(예산 및 실비보상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직영할 경

<삭제>

제5조(위탁선정위원회) ① 제4조제2항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구성·운영한다.

<삭제>

제6조(수탁자의 의무) -----

-----.

1. ~ 4. (현행과 같음)
5.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7조(위탁의 취소 등)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노인복지법 제43조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하여 사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5. (현행 제4호와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예산 및 실비보상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우에는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제4조에 의한 위탁의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0조(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① 노

인일자리사업 참여를 원하는 자 또는 단체 등은 신청에 의해 노인인력개발센터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1. 전염성 질환자 및 정신 질환자
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제11조(등록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참여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2.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로 알게 된 공무상 비밀 또는 일자리사업 수요자의 사생활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노인인

력개발센터 및 수탁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

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제4조에 의한 위탁의 경우에도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제12조(지도감독) ① -----

----- 소관업무, 회계장부, 복무사항 등 위탁사업 및 운영사항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

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 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13조(보험가입) 노인인력개발센터 종
사자 또는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일자
리사업 중 발생하는 재해, 사망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보험가입)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의해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
임의 이행을 위해 매년 대인·대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1057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6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노인복지시설(노인일자리 지원기관)로 노인복지 법령 및 사회복지사업 법령, 근로기준법 등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변경·삭제하고, 센터내 자체 운영규정과 중복 내용 등 불필요한 조항을 정리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전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 센터 이용대상 및 운영방침, 사업계획 수립·평가, 장부 및 서류의 비치 등 조항 신설(안 제3조, 제4조, 제7조, 제20조)
- 법인 위탁시 기간을 2년(조례)에서 3년(규칙)으로 개정(안 제5조)
-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 법령 및 센터 운영규정에 따르도록 개정(안 제6조 및 제12조)
- 직원의 정원·임면·자격·조직체계에 현실태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 법인 위탁시 법인 대표이사가 구청장과 협의 후 센터장 임면토록 개정(안 8조 내지 제11조)
- 사회복지사업 법령에 의한 시설 안전점검 내용 신설(안 제21조)
- 직원 보수·복무사항 등 근로기준법 등과 맞지 않는 내용 삭제 및 센터 운영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구청장 승인) 명시(안 제23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노인장애인과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애인과(전화 : 032-453-5853, FAX 453-5859, E-mail :

hannom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4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노인복지시설(노인일자리 지원기관)로 노인복지 법령 및 사회복지사업 법령,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변경·삭제하고, 센터내 자체 운영규정과 중복 내용 등 불필요한 조항을 정리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전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센터 이용대상 및 운영방침, 사업계획 수립·평가, 장부 및 서류의 비치 등 조항 신설(안 제3조, 제4조, 제7조, 제20조)
- 법인 위탁시 기간을 2년(조례)에서 3년(규칙)으로 개정(안 제5조)
-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 법령 및 센터 운영규정에 따르도록 개정(안 제6조 및 제12조)
- 직원의 정원·임면·자격·조직체계에 현실태 및 법령 개정사항 반영, 법인 위탁시 법인 대표이사가 구청장과 협의 후 센터장 임면토록 개정(안 8조 내지 제11조)
- 사회복지사업 법령에 의한 시설 안전점검 내용 신설(안 제21조)
- 직원 보수·복무사항 등 근로기준법 등과 맞지 않는 내용 삭제 및 센터 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구청장 승인) 명시(안 제23조)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별첨”

남동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노인인력개발센터”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법령,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이용대상) 노인인력개발센터 이용(등록) 대상자는 60세 이상인 자로, 남동구 주민에 한한다.

제4조(운영방침) ①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 인력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②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수행사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활동, 영리활동 및 특정 종교 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인도주의적 원칙에 의하여 이를 이용하는 참여자 및 수요자의 인간적 존엄성과 기본적 권리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참여 노인에 대한 서비스는 물론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종합적으로 향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지역 노인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특화 사업을 개발하여야 한다.

⑤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지역 노인일자리사업 활동의 증진효과와 투입재원 및 수행사업의 적정성·효율성 등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활용 발전적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기간) 조례 제4조에 의한 위탁 운영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간 만료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센터 내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평가 등) ①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매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욕구와 지역실정 및 행정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한 총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총괄 사업계획 및 각 사업별 수행계획은 연계성과 종합성을 갖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매년 수행사업에 대한 실적과 효과를 분석하여 발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운영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평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수행사업의 실질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일자리사업 시설 형태 및 구조
2. 노인일자리 창출 현황
3.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복지증진 효과와 욕구변화
4. 인력관리 및 재정투입의 합리성 등
5. 개선 방향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직원의 정원)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직원은 센터장, 팀장 2명, 직원 3명 등 6명 이내로 한다. 다만,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직원의 임면) ① 직원의 채용(센터장 포함)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센터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그 밖의 직원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센터장이 임면한다. 다만, 노인인력개발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센터장은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의 대표이사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센터장의 정년은 만 65세로 하고, 그 밖의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정신상의 질병 또는 국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자격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자격요건) 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센터장 포함)은 별표 1의 직위·직급별 자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1조(조직체계 및 임무)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조직체계, 임무 및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인사위원회 운영) ① 센터장은 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의 인사 및 징계의 공정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인사위원회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센터 내부 운영규정 내용에 따른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 소속의 임·직원은 인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13조(경력인정 및 호봉책정) 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의 경력인정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지침」을 따르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 근무경력 이외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 경력도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제14조(재원)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 및 노인일자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남동구 보조금
2. 그 밖의 수익금

제15조(재무·회계관리) ① 노인인력개발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노인인력개발센터의 회계 관리는 구청장의 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인력개발센터 재무·회계 등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사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④ 노인인력개발센터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보조금 예산의 신청) ① 센터장은 다음연도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인력개발센터의 보조금 신청시 필요에 따라 보조금을 조정하여 해당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 관리) ① 센터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재원의 관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회계서류의 보관)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수입·지출결의서 등 회계기록에 대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결산)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_회의록과 사업실적보고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20조의 첨부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장부 및 서류의 비치)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예산서 및 결산서
4. 수입·지출장부와 그 증빙서류
5.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빙서류
6. 보고서 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 문서철
7. 정관 및 관계 질의서류
8.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및 참여자 상담일지
9. 노인일자리사업 수요(요청)자 상담일지

제21조(안전점검) ① 노인인력개발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에 의해 해당 시설에 대해 매 반기마다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결과 해당 시설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안전에 필요한 경우 센터로 하여금 시설의 보완 또는 개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범위내에서 안전점검, 시설의 보완 및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공인) ① 노인인력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 관리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장 직인
2.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장 직인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③ 공인의 관리는 센터장이 하며 기타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운영규정) 노인인력개발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과 조직 및 인사관리, 복무관리, 문서관리 등에 관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채용된 직원(센터장 포함)의 자격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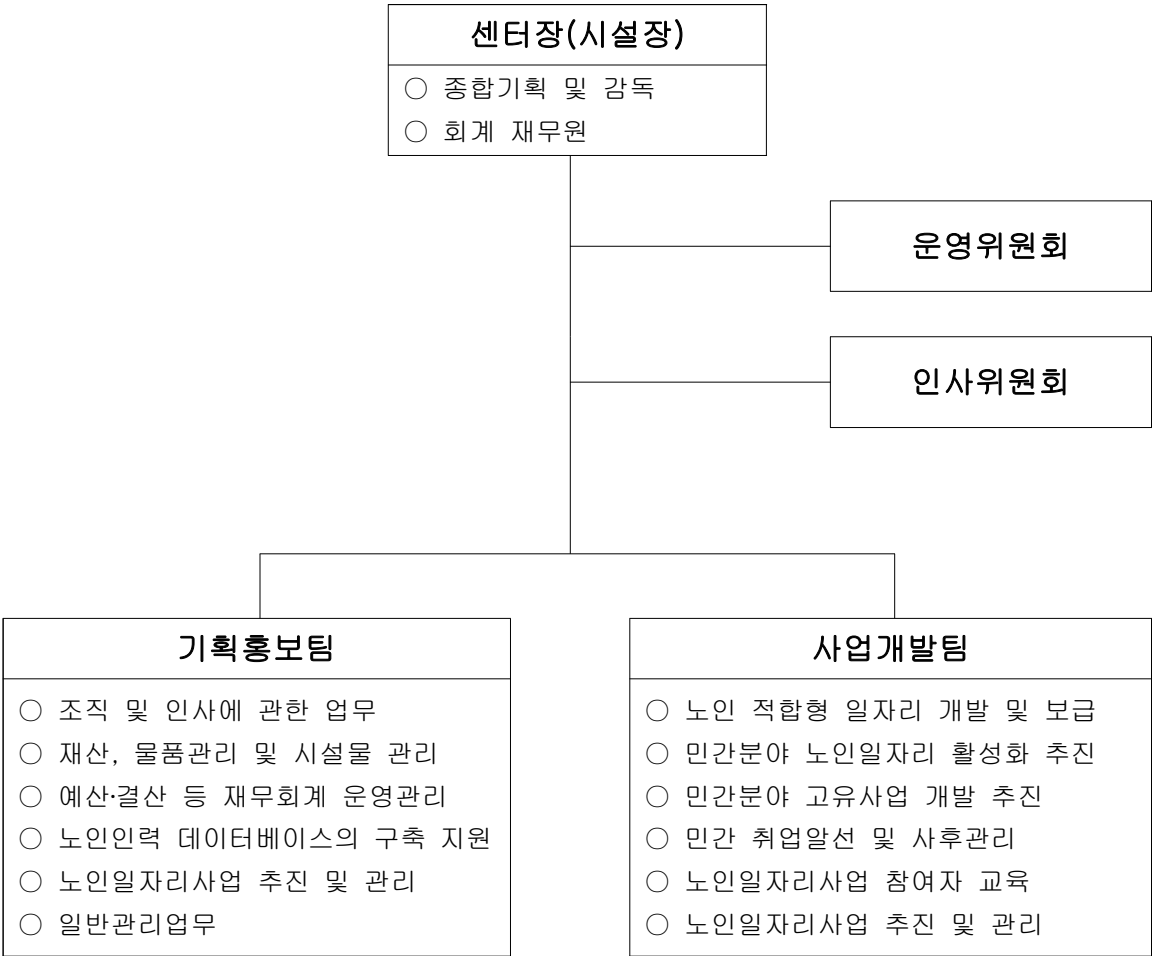
<별표 1>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직원 채용 자격기준(제10조 관련)

직 급		채 용 자 격 기 준
일반 직	센터장 (시설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급	-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3년 이상 담당할 경력이 있는 자 -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 또는 일반 기업의 경영유통(마케팅)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 및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급	-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2년 이상 담당할 경력이 있는 자 - 직업상담사 자격증 소지 또는 일반 기업의 경영유통(마케팅)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 및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급	-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정보처리, 회계 관련 자격을 소지한 자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을 1년 이상 담당할 경력이 있는 자 - 일반 기업의 경영유통(마케팅)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별표 2>

노인인력개발센터 조직체계 및 정원(제 11조 관련)



구 분(일반직)	계	센터장 (시설장)	2급	3급	4급
남동구노인인력개발센터 (직급 및 정원)	6	1	1	1	3

[별표 3]

공인의 규격 (제22조 관련)

< 센터장의 직인 >

3cm	
인천광역시남동 구노인인력개발 센터장인	3cm

< 운영위원장의 직인 >

3cm	
인천광역시남동 구노인인력개발 센터운영위원회 위원장인	3cm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1058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 규정 폐지 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 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년 6월 10 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개정이유 :

- 센터는 노인복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센터 운영규정(훈령)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 노인복지법 개정(2013.12.5.공포)으로 센터가 사회복지(노인복지)시설로 전환되어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추가로 적용받으며, 근로기준법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지침, 센터내 자체 운영규정 등의 내용과 맞지 않고 중복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이 다수 있어,
- 필요한 조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으로 흡수하였고, 센터내 자체 운영규정이 존재함에 따라 불필요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 노인장애인과장,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애인과(전화 : 032-453-5853, FAX 453-5859, E-mail : hannoma@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홈페이지(<http://www.namdong.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 규정 폐지 규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4년 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제안이유

- 센터는 노인복지 관련 법령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센터 운영규정(훈령)으로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 최근 노인복지법 개정(2013.12.5.공포)으로 센터가 사회복지(노인복지)시설로 전환되어 사회복지사업법 등을 추가로 적용받으며, 근로기준법 및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지침, 센터내 자체 운영규정 등의 내용과 맞지 않고 중복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이 다수 있어,
- 필요한 조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으로 흡수하였고, 센터내 자체 운영규정이 존재함에 따라 불필요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참고자료

남동구 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규정
폐지 규정(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규정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1065호

수용재결 신청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시행하는 “소래샛길 소2-14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문 및 토지조서 등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공고문 및 토지조서 등을 우리구 건설과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6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 “소래샛길 소2-14호선 도로개설공사”
3. 공고기간 : 2014. 6. 10 ~ 6. 25
4. 열람 및 수령장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건설과
5. 공시송달 내역
 - 가. 송달내용 : 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공고문 및 조서
 - 나. 소 유 자

연번	소유구분	성 명	소재지	대상토지	사 유	비 고
1	토지소유자	배창숙	남동구 수산동	8-2외 1필지	수취인불명	

6. 기타

공고문 및 조서는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후에는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 공고 제2014 - 1066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공고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제공일자 : 2014. 6. 10.
- 제공받은 자 : 아진전산(주)
- 제공목적 : 자동차세 6월 정기·수시분 및 독촉장(2014년 4월분) 인쇄
- 법적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제18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지방세 납세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과세대상 물건, 세액,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과세번호
- 제공받은 정보 보유기간 : 지방세 고지서 출력 완료시까지
- 공고기간 : 2014. 6. 10. ~ 2014. 6. 25. (15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2014년 6월 10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4 - 84호

간석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경미한 변경)지정 및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6-222호(2006.12.04)로 지정된 간석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지정하고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변경지정내용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 드립니다.

2014년 6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변경없음)

○ 간석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없음)

○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간석구역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번지 일원	79,489.4	(인고) 2005. 07.18	

○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간석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번지 일원	79,489.4	(인고) 2005. 07.18	

3. 토지이용계획(변경있음)

구 분	명 칭	면 적(m²)		비율(%)	비 고
도시계획 용도지역	합 계	79,489.4		100	
	제3종일반주거지역	79,489.4		100	
	계	79,489.4		100	
	공동주택	택 지 1	22,583	28.41	
		택 지 2	기정 38,570	48.52	
			변경 38,554	48.50	
	도시계획 시설	도 로	11,376.4	14.31	
		공 원	1,503	1.89	
		녹 지	1,934	2.43	
		주차장	1,765	2.22	
기 타	존 치(종교용지)	기정	1,334	1.68	
		변경	1,350	1.70	
	유보지	424		0.54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교통시설

① 도로

○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448	15-18	집산도로	257	대1-14	중2-377	일반도로	-	인고06-222 (‘06.12.04)	
기정	소로	1	229	10.5	국지도로	140	소3-64	중2-377	일반도로	-	인고06-222 (‘06.12.04)	
기정	대로	1	14	35-38	주간선도로	12,450	서해안로	중봉로	일반도로	-	-	
기정	중로	2	377	15	집산도로	339	소3-52	대1-13	일반도로	-	-	
기정	소로	2	56	8~9	국지도로	251	소3-51	대1-14	일반도로	-	경고277 (77.10.11)	
기정	소로	2	227	9	국지도로	115	소3-64	대1-14	일반도로	-	경고277 (77.10.11)	
기정	소로	3	52	6	국지도로	187	중2-377	간석동 37-1	일반도로	-	경고277 (77.10.11)	
기정	소로	3	53	6	국지도로	461	간석동 지구계	중2-377	일반도로	-	경고277 (77.10.11)	
기정	소로	3	64	6	국지도로	55	대1-14	소1-229	일반도로	-	경고277 (77.10.11)	

②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주차장	노외주차장	간석동 224-80번지 일원	1,765	(남동구 고시 2001.10.05)	-

나. 공간시설

① 녹지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②	간석 녹지-1	경관 녹지	간석동 911-1번지 일원	656	인고2006-222 (‘06.12.04)	
기정	③	간석 녹지-2	경관 녹지	간석동 912-4번지 일원	1,278	인고2006-222 (‘06.12.04)	-

② 공원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공원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간석 소공원-1	소공원	간석동 224-219번지 일원	795	인고2006-222 (‘06.12.04)	
기정	간석 소공원-2	소공원	간석동 224-713번지 일원	708	인고2006-222 (‘06.12.04)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 공동이용시설 결정 조서

구분	BL	시설의 종류	면적(m ²)	비고(기준)
공동 이용 시설	1BL	관리사무소	200m ² 이상	36.85m ² 이상
		경로당	180m ² 이상	83.70m ² 이상
		보육시설	210m ² 이상	171.60m ² 이상
		주민운동시설	450m ² 이상	450.00m ² 이상
		어린이놀이터	850m ² 이상	787.00m ² 이상
		주민휴게시설	2개소이상	2개소 이상
	2BL	관리사무소	150m ² 이상	47.10m ² 이상
		경로당	210m ² 이상	104.20m ² 이상
		보육시설	210m ² 이상	171.60m ² 이상
		주민운동시설	650m ² 이상	600.00m ² 이상
		어린이놀이터	992m ² 이상	992.00m ² 이상
		주민휴게시설	2개소이상	2개소이상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공동주택용지

구분		계획내용		비고
주용도	지정 용도	1BL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BL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1BL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2BL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1BL	• 15.00% 이하	
		2BL	• 15.00% 이하	
용적률		1BL	• 235.00%이하	
		2BL	• 230.00%이하	
높이		1BL	• 최고높이: 30층 이하	
		2BL	• 최고높이: 30층 이하	
연면적 (㎡)		1BL	• 80,000㎡이하	
		2BL	• 130,000㎡이하	

○ 종교용지(준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주 용 도	지정용도	· 종교집회장(종교집회장내 회복지시설 및 선교유치원 허용)	· 준치 대상 건축물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50% 이하	
용 적 률		· 200% 이하	
층 수		· 5층 이하	
연 면 적		· 2,700㎡ 이하	

○ 주차장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주 용 도	지정용도	· 주차장시설, 주차전용건축물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90% 이하	
용 적 률		· 250% 이하	
층 수		· 3층 이하	
연 면 적		· 4,412.0㎡ 이하	

7.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 도시경관에 관한 계획

○ 건축물경관

- 대상지내 건축물에 필로티 조성으로 조망권과 보행권 확보
- 색채, 스카이라인, 건축입면(옥탑부, 개구부)계획으로 주변경관과 조화 도모
- 도시개성창조를 위한 단지 고유 이름, 색채(도색) 등 계획수립
- 건축물의 색채는 단순하고高明도 저채도의 색채를 사용 권장하며, 슈퍼그래픽은 가급적 지양

○ 가로경관

- 교차점 및 경계부에 상징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이미지 제고
- 간선도로변(백범로) 경관녹지를 통한 가로경관 향상
- 사업지 경계부는 친환경적인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담장 설치 의무화

○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경관

- 주요 보행동선 축을 커뮤니티광장 및 휴게 및 놀이공간을 연계시켜 보행자 우선의 외부공간을 창출하여 환경친화적인 공간 계획

2)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 녹지체계

- 대상지 북쪽에 위치한 보존녹지 지역인 만월산으로부터 형성되는 녹지축 연계를 고려한 친환경적인 주거환경 조성

○ 투수성 포장재 권장

- 포장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소재의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환경오염 및 우수유출을 최소화 함

○ 우수의 재활용

- 포장의 재료는 우수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고 우수의 집수시설설치 및 리사이클시스템 도입 권장

○ 자연환경 보존

- 지형보존 및 보존가치가 높은 수목의 재활용 및 도시생태환경 보존 및 생물 종다양성에 기여하는 생태개념 적용

3)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남동구에서 기존에 발생한 재해의 재난유형별·지역별·시기별 발생특성을 조사하여 방재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수해·화재 및 폭발사고 등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재계획을 수립함
- 계획인구에 따라 방재시설물의 최소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각 방재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함
- 화재·지진 등의 재해에 취약한 건물은 가급적 불연화·내진화되도록 하고, 효과적인 재해방지를 위하여 취약지구에 대한 재해예방, 시설물 관리와 함께 재해발생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한 방재거점을 설정함
- 자연재난 및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 만약의 사고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대응체계를 구축함

8.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및 사업시행자(변경있음)

○ 예정시기

- 기준년도 : 2005년 7월 18일
- 목표년도 : 기정 (2013년 12월 31일)

변경 (2014년 12월 31일)

※ 변경사유 : 사업시행인가와의 사업기간을 통일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비 고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79,489.4	100.0	

○ 용도지구 결정 조서

구 분	위 치	면적(m ²)	연장(m)	폭원(m)	최초 결정일	비 고
일반 미관지구	남동구 간석동 224번지 일원	26,700 (3,488)	890 (227)	양측15 (편측)	(인고) 1999년 9월 2일	

※ ()는 구역 내 면적임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연면적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용지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주용도	지정 용도	1BL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BL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용도	1BL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2BL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1BL	· 15.00% 이하	
		2BL	· 15.00% 이하	
용 적 률		1BL	· 235.00%이하	
		2BL	· 230.00%이하	
높 이		1BL	· 최고높이: 30층 이하	
		2BL	· 최고높이: 30층 이하	
연 면 적 (㎡)		1BL	· 80,000㎡ 이하	
		2BL	· 130,000㎡ 이하	

○ 종교용지(준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주 용 도	지정용도	· 종교집회장(종교집회장내 사회복지시설 및 선교유치원 허용)	· 준치 대상 건축물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50% 이하	
용 적 률		· 200% 이하	
층 수		· 5층 이하	
연 면 적		· 2,700㎡ 이하	

○ 주차장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주 용 도	지정용도	· 주차장시설, 주차전용건축물	
	불허용도	· 주차시설이외의 용도	
건 폐 율		· 90% 이하	
용 적 률		· 250% 이하	
층 수		· 3층 이하	
연 면 적		· 4,412.0㎡ 이하	

라. 배치·형태·색채에 관한 사항

(가) 배치	나. · 건물의 형태와 배치 등의 변화를 유도하여 단조로운 경관 탈피
(가) 형태	다. · 지역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라.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구상
(가) 색채	마. · 건물의 주조색은 주변과 조화되지 않는 화려한 색의 사용을 금하며 바. 주변과 조화되는 색채를 사용하며 10%이내의 범위에서 강조색 사. 사용 가능

마. 건축선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구 분	제어 요소	위 치	내 용
건축 한계선	3m	· 공동주택용지 (1BL-1LOT)	· 경관녹지로부터 3m 후퇴
	3m	· 공동주택용지 (2BL-1LOT)	· 경관녹지로부터 3m 후퇴

바. 환경보전 계획 또는 경관계획

①. 기본 방향

- 당해구역의 양호한 자연환경 및 보존가치가 높은 교목의 보존계획을 수립함
- 본 사업의 조경공사가 인천시 도심부의 녹지 확충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주요 녹지체계와 연계방안을 수립함
- 단지내부의 성절토를 최소화하고, 생활환경의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단지계획기법을 적용함

②. 환경보전 계획

○ 자연환경 보전계획

- 투수성 포장으로 인한 우수유출 저감
- 보행자도로, 광장, 주차장은 투수성포장공법을 적용하여 우수 침투율을 극대화 함
- 식생블록포장
 - 자연석을 사용, 간격 띄우기를 하여 자생 초화류를 자연석 사이에 불러들이는 방법과 판석, 모래, 자갈 등 원재료를 이용하여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식생블록을 사용할 경우 지반침하의 우려를 감소시킬 수 있음

-투수성포장재의 사용

· 투수성포장은 마사토나 투수성벽돌을 사용하여 우수의 침투가 용이하며 자연 친화적인 색깔과 시각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함

-우수의 자연지반 침투가 불가능한 인공지반 상부에는 우수저류 공법을 적용하여 우수가 단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 우수 유출량이 많은 도로주변에 우수침투 및 저장 공간을 조성하여 우수 유출을 감소시킴

○ 지형 변동 및 절·성토 균형

- 절·성토 발생시 토양이 대상지 외부로 유출되거나 외부 토양이 내부로 유입되지 않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며, 표토를 보존하도록 함

- 토목공사 시 buffer zone을 설치하고 토사유출 저감을 위하여 가능한 절토 및 성토공사는 우기를 피하여 문제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강우 시에 비닐 등을 씌워 토사유실을 막음

③. 경관계획

○ 대상지 내·외부가 조화된 이미지 창조

- 대상지 내 토지이용 및 단지배치계획, 조경계획, 교통시설물계획, 가구 및 택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과 서로 연계하여 통합된 이미지를 창조함

- 대상지외부의 자연환경 및 가로경관, 녹지 및 가로시설물 등이 단지경관 구성 요소들이 대상지와 서로 통일성을 갖으면서도 개성을 발휘하도록 계획함

○ 가치로운 경관 조망권 보호

- 대상지 북측에 위치한 만월산의 조망요소를 차폐하지 않도록 단지를 배치 하고, 기존의 획일적인 도시경관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건축 물의 배치, 색채 및 외관에 변화를 줌

○ 도시차원의 가로경관 향상

- 개성 있는 가로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단지 경계부, 상징공간(주요 진 출입) 등을 특화함

- 시뮬레이션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관련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인 선정함

사. 건축물 경관계획

①. 장소성 부각

○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하고 장소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을 특화함

○ 도시의 원경, 중경, 근경으로서 지각되는 건축물 상층부, 중층부, 저층부 특화

②. 색채 및 입면디자인 계획을 통하여 정돈된 단지이미지 부각

- 대상지 이미지를 특화시킴과 동시에 지역과 조화될 수 있는 색채사용 범위 제시
- 건축물의 입면과 측면, 옥탑부, 개구부 디자인 등 단지 이미지를 부각 시킬 수 있는 지침을 제시

아. 대상지 주변과 조화되는 건축물 색채 계획

- 북쪽에 위치한 보존녹지 및 주변 지역풍토색을 고려하여 Y계열 색상팔레트 추출

자. 도시스카이라인계획

- 주변지역의 스카이라인과 균형을 이루도록 단지 내 건축물 높이 계획으로 단지 내부와 외부가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계획 함
- 이외에도 랜드마크형 건축물이 당해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시켜줄 수 있도록 상징적 요소로 개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 함

차. 녹지계획

①. 기본방향

- 녹지 및 광장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주민들이 바라 볼 수 있는 조망대상으로서 그 심미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근, 경, 중경, 원경차원의 구상
- 쾌적한 보행환경을 이루면서 사계절 변화감을 느낄 수 있는 조경 수종 선택
- 보도포장은 배경을 이루는 요소로서 보행안전 및 미관을 고려하여 색조를 선정 하고 가급적 자연소재를 활용함
- 보도 폭, 공개공지 확보 등을 통한 보행공간의 쾌적성을 증진시킴
- 북쪽에 위치한 보존녹지지역인 만월산 으로부터 형성되는 녹지축을 자연스 럽게 단지내 유입
- 녹지공간은 도시생태계 보전의 거점공간이므로 인천시에서 보여지는 자생 수종을 조경수로 선정하여 대상지 내의 녹지와 자연녹지가 서로 단절되지 않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함
- 도시녹지요소로서 점(수목, 소공원), 선(녹도, 녹지띠), 면(공원, 녹지, 광장)적인 녹지들이 가급적 단절되지 않도록 단지 내부 조경계획을 수립함
- 생활환경의 질과 관련하여 소음 및 대기오염 차단을 위한 경관녹지를 단지 경 계부에 전면적으로 배치함
- 단지의 경계나 지형이 급변하는 부분 등에 녹지대를 조성하여 녹지의 연계 수단 으로 활용하고 단절된 녹지의 길이는 최소화함

카. 가로시설물 설치

①. 기본방향

○ 가로 시설물

- 색채 및 형태, 테마 등 일체감 주는 도시경관형성에 기여하도록 함
- 지역의 인상을 좌우하는 경관형성 요소로서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역경관의 액센트로 역할 하도록 디자인 특화
- 배치장소를 유형별·위계별로 분류, 각 상황에 맞는 체계적인 시설물 배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함
- 시설물들의 기능적 연계체계를 구축, 가능한 복수의 기능을 하나로 일체화 하여 시설물 이용의 효율성을 제고
- 시공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적인 재료선정과 제작방법을 고려
- 가로시설물은 꼭 필요한 곳에만 설치
- 공중보건과 안전유지를 위해 구조적으로 안전해야 하며 피부접촉에 적합한 재료, 기능성 등을 고려
- 인간행태와 인간적 비례에 적합한 크기, 재료, 설치형식이 되도록 하며, 지체 부자유자에 대한 배려를 하도록 함
- 보행자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게끔 배치
- 가로시설물이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경관에서도 거리의 액센트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

타. 교통처리계획

①. 주변 가로망 현황

- 본 사업지주변 가로망체계를 살펴보면, 주요간선도로와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등이 격자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 사업지 남측과 접한 백범로가 동서방향으로 간석오거리와 인천대공원을 연결하고 있으며, 사업지 남동측으로 호구포길이 남북방향으로 간석사거리와 남동공단을 연결하고 있다.
- 또한, 사업지 동측으로 장재로와 주안산길이 남북방향으로 통과하고 있다.

파. 보행 및 차량동선 계획

- 차량출입금지 및 허용구간, 주차출입방향, 차량출입구의 설치 등 계획
- 간선도로 기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면도로에, 차량진출입구 설치하고 간선도로변의 가각부와 횡단보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는 차량진출입 금지
- 보행자 전용도로 마련과 가구별 순환도로체계 구축

10.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변경없음)

구분	계 획 내 용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120㎡ 이하
국민주택의 건설비율	• 총 건설세대수의 90.0% 이상
규모별 건설비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 및 건교부고시 2006-273호(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기준) 준수

1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변경없음)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1항의 정비사업 시행방법에 따라 정비구역의 전면매수에 의한 기존건축물 철거 후 공동주택 건설(전면개량방식)

12.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분	동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계	존 치	개 량	철 거 물 건	철 이 주	
연립주택	2	596	1	-	595	-	종교시설 존치 (간석교회)
다세대주택	34						
단독주택	268						
다가구주택	22						
공동주택	8						
근린생활시설	8						
종교시설	2						
기 타	13						
무허가	239						

1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참조

14.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2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건축선에 관한 결정조서

구 분	제 어 요 소	위 치	내 용
건축 한계선	3m	·공동주택용지 (1BL-1LOT)	·경관녹지로부터 3m 후퇴
	3m	·공동주택용지 (2BL-1LOT)	·경관녹지로부터 3m 후퇴

1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변경없음)

구 분	내 용
교통	-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내표시, 유도표시, 차선표시, 안전선 표시등을 설치함 - 교통사고 발생가능지역에는 미끄럼방지포장과 과속방지턱 설치
화재 및 지진	- 건축 및 안전시설 설계원칙 준수
홍수	-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수해에 관한 사항 적용

17.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있음)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구분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변경사유)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1BL	25,004	1	간석동 224-179번지 일원	22,583	-	22,583	공동주택용지
			2	간석동 224-80번지 일원	1,765	-	1,765	노외주차장
			3	간석동 923-5번지 일원	656	-	656	경관녹지
	2BL	43,109	1	간석동 224-314번지 일원	38,570	감)16.0	38,554	공동주택용지 (종교시설용지 현황측량 결과 반영)
			2	간석동 224-222번지 일원	1,334	증)16.0	1,350	종교시설용지(존치) 현황측량결과 반영
			3	간석동 225-200번지 일원	234	-	234	유보지
			4	간석동 225-203번지 일원	92	-	92	유보지
			5	간석동 225-27번지 일원	98	-	98	유보지
			6	간석동 911-16번지 일원	1,278	-	1,278	경관녹지
			7	간석동 224-219번지 일원	795	-	795	공원(소공원)
			8	간석동224-713번지 일원	708	-	708	공원(소공원)

18.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계획(변경없음)

구분	TYPE	전용면적	세대수	임대비율	법정기준	임대형식
1BL-1LOT	40m ² 이하	39	138세대	10.01%	111세대 이상 (전체세대수의 8% 이상)	5년 공공 임대
	40~60m ² 이하	59	178세대	12.91%		
합계			316세대	22.92%	276세대 이상 (전체세대수의 20% 이상)	

19. 이행조건사항 (변경없음)

- 지형·지세에 순응하는 건축물 배치계획(옹벽제거 등) 및 경관계획 수립
- 사업지구 우측(2BL 3,4,5LOT 등) 구역계 정형화
- 만월산 터널부근 진출입구에 대한 교통처리대책 수립

20.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 및 남동구 도시관리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고 시

인천광역시남동구 고시 제2014 - 85호

간석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사업시행인가(변경) 고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번지 일원의 「간석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에 대하여 같은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032-453-2952)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4년 6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명칭(변경없음)

- 종 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 명 칭 : 간석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224번지 일원
- 면 적 : 79,489.4m²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있음)

- 성 명 : **기정-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지송(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변경-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이재영(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 주 소 : **기정-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변경-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정자동 217번지)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변경없음)

◦ 시 행 기 간 : 인가고시일로부터 ~ 2014년 12월 31일

5.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등 건축계획에 관한사항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있음)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당초	변경	변경후	당초	변경후	
계		79,489.4	-	79,489.4	100.00	100.00	
공동주택 용지	소계	61,153.0	감)16. 0	61,137.0	76.93	76.91	단지내상가 및 주민공동시설 포함
	1BL	22,583.0	-	22,583.0	28.41	28.41	
	2BL	38,570.0	감)16. 0	38,554.0	48.52	48.50	
정비기반 시설용지	도 로	11,376.4	-	11,376.4	14.31	14.31	무상귀속
	경관녹지	1,934.0	-	1,934.0	2.43	2.43	무상귀속 (2개소)
	소공원	1,503.0	-	1,503.0	1.89	1.89	무상귀속 (2개소)
	노외주차장	1,765.0	-	1,765.0	2.22	2.22	무상귀속
유보지		424.0	-	424.0	0.54	0.54	무상귀속
종교용지		1,334.0	증)16. 0	1,350.0	1.68	1.70	공급 255m ² 존치 1,095m ²

나.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율·높이·용도등 건축계획(변경있음)

구분		단위	내역							
			1BL			2BL				
공동주택	대지면적	m ²	22,583.00			기정 : 38,570.00 변경 : 38,554.00				
	건축면적	m ²	3,373.76			5,438.70				
	지상연면적	m ²	52,437.35			87,170.50				
	지하연면적	m ²	21,823.91			30,526.66				
	건폐율	%	14.94%			기정 : 14.10% 변경 : 14.11%				
	용적률	%	232.09%			기정 : 225.91% 변경 : 226.01%				
	최고높이	층	26			28				
	주차대수	대	지상	16(2.5%)		642	지상	70(7.5%)		935
			지하	626(97.5%)			지하	865(92.5%)		
		조경면적	m ²	9,484.36(41.9%)			16,571.76(42.9%)			

6.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구 분				단위	내 역	
					1BL	2BL
건설 호수	공동 주택	임대	60m ² 이하	세대	178	-
			40m ² 이하	세대	138	-
		분양	85m ² 초과	세대	-	-
			85m ² 이하	세대	185	704
			60m ² 이하	세대	86	88
		계			587세대	792세대

7.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가. 도로(변경없음)

구 모				연장(m)	기점	종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대로	1	14	35-38	12,450	서해안로	중봉로	일부구간 확폭 (L=181m)
중로	2	448	15-18	257	대1-14	중2-377	구역내 구간
중로	2	377	15	339	소3-52	대1-13	구역내외 구간 포함
소로	1	229	10.5	140	소3-64	중2-377	구역내외 구간포함
소로	2	227	9	115	소3-64	대1-14	구역내외 구간포함
소로	2	56	8~9	251	소3-51	대1-14	구역내외 구간포함

나. 주차장(변경없음)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비고
주차장	노외주차장	간석동 224-80 일원	1,765	기존 주차장 위치변경

다. 녹지(변경없음)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²)	비고
간석 녹지-1	경관녹지	간석동 911-1	656	신설
간석 녹지-2	경관녹지	간석동 912-4	1,278	신설

라. 공원(변경없음)

시 설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m ²)	비고
간석소공원-1	소공원	간석동 224-219번지 일원	795	
간석소공원-2	소공원	간석동 224-713번지 일원	708	

8. 첨부 : 관계도서(게재 생략)